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2일, 한병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 위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

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게 부여된 행정입법 권한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법률의 체계상 현행 「지방자치법」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건영 위원)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 운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의 정비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 운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의 정비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부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u> <u>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u> <u>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u>	<u>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u> <u>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u>

대한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필요한 경
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제1
1조에 따른 사무배
분의 기본원칙, 제
12조에 따른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과
제14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
별 사무배분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
의견을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

	<u>한 세부 검토 기준</u> <u>등 그 밖의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부칙 이 법은 <u>공포 후 3개</u> <u>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부칙 -----<u>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u> <u>양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 <u>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u> <u>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u> <u>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u> <u>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1. <u>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u> <u>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u> <u>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u> <u>항</u> 2. <u>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u> <u>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u> 3. <u>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u> <u>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u> <u>사항</u>